

MYONGJI

명지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 모집요강

한계 없는 진화
명지, 다음 세대를 켜다

Limitless Evolution.
Powering On the Next Generation.



명지대학교
MYONGJI UNIVERSITY



명지대

2027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I. 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주요사항	03
II. 2027학년도 전형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04
III. 2027학년도 전형 일정	06
IV. 2027학년도 전형 안내	
1. 지원자격	07
2. 지원자격 심사기준(공통)	09
3. 전형방법, 선발원칙 및 동점자처리기준	10
V. 제출서류	
1. 제출서류	12
2. 서류 제출 안내	14
3. 서류 제출 유의사항	16
VI. 유의사항	17
VII. 전형료 및 환불 안내	20
VIII. 기타 안내	21
IX. 별첨(각종 제출서류 양식)	24
1. 재외국민 특별전형 재학·근무기간 기록표	25
2. 학력조희 동의서	26
3. 사유서	27
4. 제3국 수학인정서	28
5.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29

※ 본 모집요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원서접수 시 최종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학년도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 모집단위 변경사항

단과대학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경영학전공	
	경영정보학과	AI경영정보학과	
반도체·ICT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AI응용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AI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AI응용시스템전공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전기정보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스포츠·예술대학	아트앤멀티미디어음악학부	예술학부	* 세부 트랙 운영: 피아노, 성악, 싱어송라이터, 작곡
	건반음악전공	아트앤멀티미디어음악전공*	
	보컬뮤직전공(성악, 실용보컬)		
	작곡전공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전공	영화전공*	* 세부트랙 운영: 연기, 연출
	뮤지컬공연전공	뮤지컬공연전공	
미래융합대학	창의융합인재학부	미래전략학부	* 창의융합인재학부와 미래융합경영학과를 통합·연계한 전공임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전공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전공	
	법무행정학과	융합경영학전공*	
	심리치료학과	회계세무학전공	
	미래융합경영학과	융합인재학부	
	회계세무학과	사회복지학전공	
	멀티디자인학과	심리치료학전공	
		멀티디자인전공	

※ 학사구조 개편 및 정원 조정 등에 따라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승인 이후 최종 확정되어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I . 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주요사항

1 모집인원 및 전형 방법(※ 모집요강 pp. 04~05, p. 10 참조)

전형명	계열	모집인원	전형방법
재외국민(2%)	전 계열	50	[일괄] 면접 100%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제한없음	
북한이탈주민		제한없음	

2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사항(※ 모집요강 p. 10 참조)

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경우, 각호의 감점기준에 따라 처리함
나. 복수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사항 1개를 최종 적용함

구분		감점기준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감점 없음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150점 감점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300점 감점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결격 처리
제9호	퇴학처분	

II. 2027학년도 전형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인문캠퍼스

(단위: 명)

단과대학	모집단위		재외국민(2%)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인문	인문콘텐츠학부	국어국문학전공★	4	제한없음	제한없음
		영어영문학전공★			
		미술사·역사학전공			
		문헌정보학전공★			
	아시아·중동어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아랍지역학전공★			
	문예창작학과				
사회과학	공공인재학부	행정학전공★	4		
		정치외교학전공			
	경상·통계학부	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응용통계학전공			
	법학과★				
경영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8		
	AI경영정보학과				
미디어 · 휴먼라이프	디지털미디어학부		6		
	청소년지도·아동학부	청소년지도학전공★			
		아동학전공★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융합	융합소프트웨어학부	응용소프트웨어전공	8		
		데이터사이언스전공			
		인공지능전공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아너칼리지	자율전공학부(인문)		10		
소 계			40	제한없음	제한없음

- 본교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등에 따라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 단과대학(광역) 또는 학부 단위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은 해당 모집단위 내의 학과(전공이 없는 학부 포함) 또는 전공을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음
- 아너칼리지(전공자유대학) 자율전공학부(인문, 자연)로 입학한 학생은 2개 학기 등록 후 2학년 진급 시에 미래융합대학 및 스포츠·예술대학을 제외한 인문/자연캠퍼스 모든 학과(전공이 없는 학부 포함), 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을 제한없이 선택할 수 있음
- “★” 표시 모집단위는 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전공으로 본교 학칙 시행규칙(학사과정)에 따라 교직 이수 가능함
- 경영대학은 한국경영교육인증원(KABEA)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교육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함
- 인문대학 중어중문학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아너칼리지 자율전공학부 및 인문대학 광역 모집단위 입학 후 중어중문학전공 선택 시 동일) 현지학습제도(7+1 학기제)에 따라 8학기 중 1학기를 중국에서 수학함

2 자연캠퍼스

(단위: 명)

단과대학	모집단위		재외국민(2%)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화학 · 생명과학	화학·에너지융합학부	화학나노학전공		제한없음 (스포츠지도학전공 [야] 제외)	제한없음 (스포츠지도학전공 [야] 제외)	
		융합에너지학전공				
	융합바이오학부	식품영양학전공★				
		시스템생명과학전공				
스마트 시스템과	기계시스템공학부<기계공학전공·로봇공학전공>					
	스마트인프라공학부	건설환경공학전공				
		환경시스템공학전공				
		스마트모빌리티공학전공				
	항공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반도체 · ICT	반도체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정보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컴퓨터AI응용전공학부	AI컴퓨터공학전공				
		AI응용시스템전공				
	산업경영공학과					
스포츠 · 예술	디자인학부	비주얼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3			
		인더스트리얼디자인전공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스포츠학부★	체육학전공,스포츠산업학전공				
		스포츠 지도학 전공 [야]				축구(남)
						농구(남)
						배구(남)
						테니스(남/여)
		골프				
	예술학부	아트앤멀티미디어음악전공				
		영화전공★				
뮤지컬공연전공★						
건축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2			
		전통건축학전공				
	공간디자인학과					
아너칼리지	자율전공학부(자연)		5			
소 계			10	제한없음	제한없음	
총 계			50	제한없음	제한없음	

- 본교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등에 따라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 단과대학(광역) 또는 학부 단위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은 해당 모집단위 내의 학과(전공이 없는 학부 포함) 또는 전공을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음
※ 단, 스포츠·예술대학의 경우 스포츠학부 스포츠지도학전공[야]은 제외함
- 아너칼리지(전공자유대학) 자율전공학부(인문, 자연)로 입학한 학생은 2개 학기 등록 후 2학년 진급 시에 미래융합대학 및 스포츠·예술대학을 제외한 인문/자연캠퍼스 모든 학과(전공이 없는 학부 포함), 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을 제한없이 선택할 수 있음
- 스포츠·예술대학 예술학부 아트앤멀티미디어음악전공은 피아노, 성악, 싱어송라이터, 작곡 트랙으로, 영화전공은 연기, 연출 트랙으로 세부트랙 운영함
- “★” 표시 모집단위는 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전공으로 본교 학칙 시행규칙(학사과정)에 따라 교직 이수 가능함
- 건축대학 건축학부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에서 시행하는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함

III. 2027학년도 전형 일정

1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6. 7. 6.(월) 10:00 ~ 7. 10.(금) 18:00	- 인터넷 접수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서류제출 (온라인)	2026. 7. 6.(월) 10:00 ~ 7. 13.(월) 11:00	- 제출기간 이후 제출 불가 - p. 14 '서류 제출 안내' 참조
면접고사장 발표	2026. 7. 15.(수) 15:00	- 입학처 홈페이지 안내(https://iphak.mju.ac.kr)
면접고사	2026. 7. 22.(수)	- 인문캠퍼스(서울) 실시
최초합격자 발표	2026. 8. 20.(목) 15:00	- 입학처 홈페이지 안내(https://iphak.mju.ac.kr)
최초합격자 등록 (온라인 문서등록)	2026. 12. 21.(월) ~ 12. 23.(수)	- 최초합격자 발표 시 등록 관련 내용 공지 예정 - 입학처 홈페이지 안내(https://iphak.mju.ac.kr)
충원합격자 발표	2026. 12. 24.(목) ~ 12. 29.(화) 18:00	- 최초합격자 발표 시 충원 관련 내용 공지 예정 - 입학처 홈페이지 안내(https://iphak.mju.ac.kr)
충원합격자 등록	~ 2026. 12. 30.(수)	
최종 등록 (등록금 납부)	2027. 2. 10.(수) ~ 2. 12.(금)	
최종등록자 서류제출	~ 2027. 2. 19.(금)	- 등기우편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p. 16 '서류 제출 유의사항' 참조

※ 상기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사항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hak.mju.ac.kr>)에 공지함

※ 일자, 입시시간, 고사장, 캠퍼스 혼동 등으로 인한 지각 및 결시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IV. 2027학년도 전형 안내

1 지원자격

가. 재외국민(2%)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내용
자녀	재학조건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하여야 함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체류조건	본인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약 273일)을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부모	재직조건	부모 중 한 명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 근무/사업/영업하여야 함
	체류조건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 및 자녀(학생)와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 함 ※ 자녀(학생)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약 243일)을 배우자와 함께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 보호자의 국외 근무 기간은 증명서(재직 및 경력증명서 등)상 국외 근무 발령일로부터 귀임 발령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 현재 국외 근무, 거주, 체류 중일 경우, 해당 기간의 최종일은 학생의 졸업 예정일까지로 산정함
- ※ 보호자의 근무, 거주, 체류 기간은 학생의 국외 재학 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하며, 보호자가 소속 기관(회사)의 공식적인 발령이 아닌 개인적인 유학, 교육, 연수, 안식년, 여행 등으로 국외에 근무/거주하는 기간은 제외함
- ※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기간은 적용하지 않음. 단, 학생의 재학 기간 중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이전까지 배우자의 국외 거주 사실을 확인함
- ※ 거주기간 및 체류 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 근무 확인 서류, 재학 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함
-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날까지를 각각 1개 학년·1개년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외 재학·체류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 보호자 근무지 국가의 지역·종교·전쟁 등 특성상 불가피하게 제3국 소재 학교를 재학한 경우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사유서(본고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나. 전 교육과정 이수자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도 지원자격에 포함됨
 -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지원자 본인으로서, 보호자에 대한 별도 조건은 없음

구분		내용
본인	재학조건	우리나라 학제인 12년(24학기)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를 원칙으로 함
	체류조건	

-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지원자 본인으로서, 보호자에 대한 별도 조건은 없음

2 지원자격 심사기준(공통)

가. 국외학교 인정기준

- 1) **국외학교는 해당국 관계법령에 의거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만을 의미**합니다.
- 2) 국외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 및 국외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국내·외 검정고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등의 학력은 미인정됩니다.
- 3)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 학력을 인정합니다.

나. 국외학교 교육과정 인정기준

국내 교육과정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1~6학년 과정(Grade 1 ~ Grade 6)	Year 2 ~ Year 7 과정
중학교 과정	7~9학년 과정(Grade 7 ~ Grade 9)	Year 8 ~ Year 10 과정
고등학교 과정	10~12학년 과정(Grade 10 ~ Grade 12)	Year 11 ~ Year 13 과정

다. 국외학교 재학기간 심사기준

- 1)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능)

<중복 관련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인정함

- 2)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교발급 사유서, 관련 규정 등)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4) 국외 고교졸업 예정인 경우 재학 기간 산출을 졸업 예정일까지로 하고, 2027년 2월 28일(일)까지 졸업하여야 함
 - ※ 단, 학제 상 고교 졸업이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 2027년 3월 졸업까지 인정함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합니다.

3 전형방법, 선발원칙 및 동점자 처리기준

가. 전형방법

1)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구분	모집단위	전형방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재외국민(2%)	전 모집단위	일괄전형	면접고사 100%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2) 면접고사

구분	내용		
면접방법	• 개별면접(면접위원 2~3명)		
면접자료	• 면접기초자료 작성(20분) - 2~3문항의 간략한 자기소개 형태이며, 평가점수로 반영되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면접시간	• 5분 내외		
평가요소별 반영비율 및 내용	• 공동체역량	35%	- 성실성, 공동체의식, 소통능력
	• 진로역량	35%	- 진로탐색 활동과 경험
	• 의사소통능력	30%	- 논리성, 전달능력

※ 스포츠·예술대학 내 모집단위 지원자의 경우 면접고사 시 간단한 실기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음

나.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사항

- 대상전형: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체
- 학교폭력 조치사항 검증 대상자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북한이탈주민전형 지원자 중 검정고시 출신자(단, 2012년 3월 이후 고교 재학 사실이 있는 자만 해당)
- 학교폭력 조치사항 감점기준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경우, 각호의 감점기준에 따라 처리함
 - 복수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사항 1개를 최종 적용함

구분		감점기준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감점 없음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150점 감점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300점 감점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결격 처리
제9호	퇴학처분	

다. 선발 원칙 및 동점자 처리 기준

- 1)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함
- 2) 전형 총점이 동일할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선발함(단,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일 경우 모두 선발함)
- 3) 지원자격 미달자 및 서류 미제출자, 면접고사 결시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함
- 4) 대학 입학전형 결과, 본교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입학을 불허할 수 있음
- 5) 합격자 중 미등록, 등록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총원합격자 선발함

▶ 동점자 처리기준

재외국민(2%)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	------------	--------

① 면접평가 진로역량 성적 우수자 / ② 면접평가 공동체역량 성적 우수자

V. 제출서류

1 제출서류

가. 재외국민(2%)

1) 공통

연번	제출서류	제출	비고
1	입학원서	필수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및 출력 가능
2	재학·근무기간 기록표(본교 양식: 별첨1)	필수	- 재학·근무기간 기록표 작성 시 지원자의 재학 기간 및 국외근무 보호자의 근무 기간은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기재된 날짜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함
3	학력조회 동의서(본교 양식: 별첨2)	필수	
4	초등학교 성적·재학증명서	필수	- 전 학년 증명서 제출
5	중학교 성적·재학증명서	필수	※ 제출서류의 우측 상단에 해당 학년·학기 기재 요망
6	고등학교 성적·재학·졸업(예정)증명서	필수	- 전입(입학), 전출(졸업)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국내 혹은 재외한국학교(교육부인가)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7	국외학교 학사일정표	필수	- 각 연도별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형광펜으로 표시 요망
			- 인터넷 출력, 캡처 화면 출력본 인정함
			※ 단, url 등 출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	- 지원자 본인 기준 1부
9	출입국사실증명서	필수	- 지원자, 부, 모 기준 각 1부
			※ 지원자의 국외 재학기간, 국외근무 보호자의 근무기간 등 지원 자격에 해당 하는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발급해야 함
10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	필수	- 지원자, 부, 모 기준 각 1부
11	여권 사본	필수	- 지원자, 부, 모 기준 각 1부
			※ 신여권 제출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12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필수	- 지원자, 부, 모 기준 각 1부
13	사유서(본교 양식: 별첨3)	선택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재학기간(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 기록 폐지 등), 체류기간, 재직기간 등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소명할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 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14	제3국 수학인정서(본교 양식: 별첨4)	선택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보호자 근무지 국가의 지역·종교·전쟁 등 특성상 불가피하게 제3국 소재 학교를 재학한 경우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15	기타	선택	- 부모 이혼 시: 기본증명서(지원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국외근무자 기준)
			-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 이전 사망 시) 또는 기본증명서(2008년 1월 이후 사망 시), 혼인관계증명서(생존한 부 또는 모 기준)

2) 보호자(국외근무자) 재직 관련 서류

재직 형태	제출서류	제출	비고
국외 파견 재직자	재직(경력)증명서	필수	- 본사 인사권자 발행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사설치인증서 사본	필수	- 국외 근무 기간 및 국가명 기재
현지 취업자	재직(경력)증명서	필수	- 상사주재원 필수 제출(발급기관 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제출
	법인세 납부이력	필수	- 국외 근무 기간 및 국가명 기재
현지 자영업자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지원자의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발급
	세금 납부이력	필수	- 세금납부증명서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이력 대체 제출 가능
			- 지원자의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발급
			- 사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이력 제출

나. 전 교육과정 이수자

연번	제출서류	제출	비고
1	입학원서	필수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및 출력 가능
2	재학·근무기간 기록표(본교 양식: 별첨1)	필수	- 재학·근무기간 기록표 작성 시 지원자의 재학 기간 및 국외근무 보호자의 근무 기간은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기재된 날짜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함
3	학력조회 동의서(본교 양식: 별첨2)	필수	
4	초등학교 성적·재학증명서	필수	- 전 학년 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의 우측 상단에 해당 학년·학기 기재 요망
5	중학교 성적·재학증명서	필수	- 전입(입학), 전출(졸업)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6	고등학교 성적·재학·졸업(예정)증명서	필수	- 재외한국학교(교육부인가)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7	국외학교 학사일정표	필수	- 각 연도별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형광펜으로 표시 요망 - 인터넷 출력, 캡처 화면 출력본 인정함 ※ 단, url 등 출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8	출입국사실증명서	필수	- 지원자 본인 기준 1부 ※ 지원자의 국외 재학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발급해야 함
9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	필수	- 지원자 본인 기준 1부
10	여권 사본	필수	- 지원자 본인 기준 1부 ※ 신여권 제출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1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선택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지원자 본인 기준 1부
12	사유서(본교 양식: 별첨3)	선택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재학기간(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 기록 폐지 등), 체류기간, 재직기간 등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소명할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 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다. 북한이탈주민

연번	제출서류	제출	비고
1	입학원서	필수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및 출력 가능
2	고등학교 성적·재학·졸업(예정)증명서	필수	- 지원자별 해당 사항에 맞게 제출 ※ 국내 혹은 재외한국학교(교육부인가)의 경우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 국내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는 반드시 대입전형용 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고등학교 재학 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 2012년 3월 이후 고교 재학 사실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 를 제출해야 함) ※ 북한학교 출신자의 경우 학력인정증명서 제출
3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필수	
4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선택	- 관할 기관에서 발급
5	사유서(본교 양식: 별첨3)	선택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재학기간(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 기록 폐지 등), 체류기간, 재직기간 등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소명할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 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2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대상: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 전체

나. 제출기한: 2026. 7. 6.(월) 10:00 ~ 7. 13.(월) 11:00

다. 제출방법: 온라인 업로드를 통한 서류제출

- 모든 서류는 **온라인(원서접수 사이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며, 제출기한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발급받은 원본 또는 인터넷 발급받은 원본 서류의 **스캔본(PDF 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필수서류 미제출자 및 지원자격 미달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합격취소) 처리합니다.
- 모든 서류제출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온라인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실제 발급받은 원본 또는 인터넷 발급받은 원본 서류의 스캔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전형 혹은 지원자격에 따라 모집요강에 안내된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하단 안내에 따라 분류하여 **PDF 형식으로 스캔**하고, 이를 **“1개의 압축파일(ZIP)”**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파일 손상, 낮은 해상도, 스캔 오류 등으로 인하여 서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 인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업로드 전 반드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파일 업로드 완료 후, 다운로드 메뉴에서 해당 파일을 직접 확인하여 제출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위·변조,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합격(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라. 제출서류별 PDF 파일 분류

1) 재외국민(2%)

연번	제출서류	PDF 파일명	비고
1	입학원서	1.수험번호_기초자료.pdf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후 제출
2	재학·근무기간 기록표		
3	학력조회 동의서		
4	초등학교 성적·재학증명서	2.수험번호_초등학교학적자료.pdf	일괄 스캔 후 제출
5	중학교 성적·재학증명서	3.수험번호_중학교학적자료.pdf	일괄 스캔 후 제출
6	고등학교 성적·재학·졸업(예정)증명서	4.수험번호_고등학교학적자료.pdf	일괄 스캔 후 제출
7	국외학교 학사일정표	5.수험번호_학사일정표.pdf	일괄 스캔 후 제출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수험번호_가족관계증명서.pdf	일괄 스캔 후 제출
9	출입국사실증명서	7.수험번호_출입국사실증명서.pdf	지원자, 부, 모 서류를 각 1부씩 준비하여 일괄 스캔 후 제출
10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	8.수험번호_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pdf	
11	여권 사본	9.수험번호_여권사본.pdf	
12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0.수험번호_재외국민등록부등본.pdf	
13	보호자(국외근무자) 재직관련 서류	11.수험번호_재직서류.pdf	일괄 스캔 후 제출
14	사유서	12.수험번호_기타서류.pdf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후 제출
15	제3국 수학인정서		
16	기타		일괄 스캔 후 제출

1~12번 PDF 파일을 “1개의 압축파일(ZIP)”로 원서접수사이트(진학어플라이)에 업로드

2) 전 교육과정 이수자

연번	제출서류	PDF 파일명	비고
1	입학원서	1.수험번호_기초자료.pdf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후 제출
2	재학·근무기간 기록표		
3	학력조회 동의서		
4	초등학교 성적·재학증명서	2.수험번호_초등학교학적자료.pdf	일괄 스캔 후 제출
5	중학교 성적·재학증명서	3.수험번호_중학교학적자료.pdf	일괄 스캔 후 제출
6	고등학교 성적·재학·졸업(예정)증명서	4.수험번호_고등학교학적자료.pdf	일괄 스캔 후 제출
7	국외학교 학사일정표	5.수험번호_학사일정표.pdf	일괄 스캔 후 제출
8	출입국사실증명서	6.수험번호_출입국사실증명서.pdf	일괄 스캔 후 제출
9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	7.수험번호_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pdf	일괄 스캔 후 제출
10	여권 사본	8.수험번호_여권사본.pdf	일괄 스캔 후 제출
1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9.수험번호_재외국민등록부등본.pdf	일괄 스캔 후 제출
12	사유서	10.수험번호_기타서류.pdf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후 제출

1~10번 PDF 파일을 “1개의 압축파일(ZIP)”로 원서접수사이트(진학어플라이)에 업로드

3) 북한이탈주민

연번	제출서류	PDF 파일명	비고
1	입학원서	1.수험번호_기초자료.pdf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후 제출
2	고등학교 성적·재학·졸업(예정)증명서	2.수험번호_고등학교학적자료.pdf	일괄 스캔 후 제출
3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3.수험번호_북한이탈주민서류	일괄 스캔 후 제출
4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일괄 스캔 후 제출
5	사유서	4.수험번호_기타서류.pdf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후 제출

1~4번 PDF 파일을 “1개의 압축파일(ZIP)”로 원서접수사이트(진학어플라이)에 업로드

3 서류 제출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 1) 국내 발급 서류는 2026. 7. 1.(수)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하며, 국외 발급 서류는 발급 기준일을 제외합니다.
- 2) 국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초·중·고등학교 성적/재학증명서,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보호자 재직증명서, 세금납부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등)의 경우 반드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포함하여 제출하거나, 해당 거주국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하며, 교육부에서 승인한 재외 한국학교의 증명서는 학교장 직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3)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5) **모든 서류제출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최종등록자 필수 추가서류 제출

- 1) 제출대상: 최종등록자 중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했던 자
- 2)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업로드한 제출서류 원본
- 3) 제출기한: 2027. 2. 19.(금)
- 4) 제출방법: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 제출주소: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입학처 (행정동 4층)
- 5) 비교
 - 최종등록자 고교 졸업 사실 및 최종적으로 지원자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제출서류를 우편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겹봉투에 부착한 후 입학원서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합니다.
 - 최종등록자가 ① 추가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② 최종적으로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당시 졸업예정자로 지원한 최종등록자는 반드시 최종 졸업 관련 서류(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및 지원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사실증명서(졸업일 이후 발급)를 제출합니다.
 - 국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초·중·고등학교 성적/재학증명서,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보호자 재직증명서, 세금납부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등)의 경우 반드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포함하여 제출하거나, 해당 거주국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하며, 교육부에서 승인한 재외 한국학교의 증명서는 학교장 직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대조를 위해 본교를 방문할 경우, 반드시 원본과 함께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VI. 유의사항

1 지원자 유의사항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공통사항>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 등에서 대학이 실시하는 전형에 지원할 수 있음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 가능한 횟수는 최대 6회로 제한함
※ '6회 제한'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을 포함하여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이 해당됨
※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모집시기를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수시모집 지원횟수 제한, 정시모집 군별 지원횟수 제한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복수지원 관련 사항>

- 복수지원 허용 범위: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 복수지원 금지사항
가.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나.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된 회차의 지원을 무효로 함
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모집시기를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모집시기 간 복수지원 금지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42조의2에 의거, 합격자의 등록마감 후 입학 학기가 같은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으로 검색하여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2 본교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6. 7. 6.(월) 10:00 ~ 2026. 7. 10.(금) 18:00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 접 수 처: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hak.mju.ac.kr>)에 접속하여 "원서접수" 배너 클릭
※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등에 대한 안내: 모집요강(p. 20) 참조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별도의 원서 교부 및 방문접수는 하지 않음) / 세부안내 하단 참조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 대행기관으로 이동
대입 공통원서접수 통합회원 가입 및 로그인	▶	반드시 지원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접수대학 리스트 중 [명지대학교] 선택	▶	명지대학교 선택 여부를 반드시 확인
모집요강 및 원서접수 유의사항 숙지	▶	입학원서 작성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원서접수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
지원내용 및 지원자 정보 입력(사진첨부)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증명사진을 파일(jpg, gif)로 업로드
입력사항 확인 및 전형료 결제	▶	전형료 납부 전 반드시 최종 입력 내용 확인
수험표 확인	▶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원서접수 완료
서류 제출(해당자에 한함)	▶	2026. 7. 6.(월) 10:00 ~ 7. 13.(월) 11:00 / 온라인(업로드) 제출
제출서류 도착여부 확인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hak.mju.ac.kr)

4) 유의사항

- 가) 입학원서 접수기간과 마감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모집요강 및 원서접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 나) 입학원서 작성 후 전형료 결제를 마쳐야 접수가 완료되며, **원서접수 완료 후 원서접수 취소, 모집단위 변경, 전형 및 지원자격 변경, 전형료 환불 등은 일절 불가**합니다.
- 다) 입학원서 작성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내용과 같아야 하며,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정보와 입학원서 상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라) 지원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전기기간 중 사용되므로 연락이 가능한 전화, 휴대전화 등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변경된 경우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입학원서 개인정보 정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수정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 **2027학년도 재외국민 원서접수는 ‘인터넷(온라인)’으로만 시행**하며, 다음의 원서접수 업체가 대행합니다. 만약 접수 관련 문의사항이 있거나 원서접수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접수업체 안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학어플라이 / 홈페이지: <https://www.jinhakapply.com> / 전화: 1544-7715

나. 면접고사

- 1) 지원자 모두 면접고사 대상자입니다.
- 2) 면접고사 당일 신분확인을 위해 본인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3)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전 예비소집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지원자는 학교 위치, 교통편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4) 면접평가 시 수험번호, 성명, 출신교고는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고사 당일 신분을 노출시킬 수 있는 교복 착용을 금지하며,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5) 고사 진행에 있어 특별한 별도 관리(도움)가 필요한 지원자는 원서접수 전 입학처로 연락하여 고사 진행과정에 필요한 각종 편의제공 사항에 대하여 상의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주요일정

발표차수	발표일정(안)	등록일정(안)	발표 방법
최초 합격자	2026. 8. 20.(목) 15:00	2026. 12. 21.(월) ~ 12. 23.(수)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s://iphak.mju.ac.kr)
충원 합격자	2026. 12. 24.(목) ~ 12. 29.(화) 18:00	~ 2026. 12. 30.(수)	최초합격자 발표 시 충원관련 내용 공지 예정

※ 상기 발표 일시 및 등록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초 합격자 발표

- 합격여부 확인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개별통보 하지 않음),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원서접수 시 입력한 전화, 휴대전화 등이 변경된 경우,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입학원서 개인정보 정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수정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최초 합격자 등록

가) 등록방법: **일정에 따라 문서등록 후 등록금 납부(최종등록)**

- 나) 등록기간에 문서등록을 하지 않거나 문서등록 후 최종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포기로 처리합니다.
- 다)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는 인터넷으로만 교부하며, 필요 시 합격자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 라) 문서등록 후 등록금을 납부(최종등록)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등록금 납부 시 전액 장학대상자(등록금 “0원”)도 등록금고지서 확인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최종등록하여야 합니다.
- 바)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등록이 허용되지 않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충원합격자 발표 및 미등록 충원

- 가) 충원합격자 발표 일정은 2026. 12. 24.(목) ~ 12. 29.(화) 18:00까지 진행되며, 발표 및 등록 등 충원합격자 관련 세부일정은 최초합격자 발표 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나)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한 발표 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개별통보 하지 않음),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 전화 개별통보 시 입학원서에 입력한 연락처의 오류 또는 연락두절(연락처 변경 등)로 인하여 합격통보가 되지 않을 경우(3회 이상 수신 불가)에는 차순위자를 충원 선발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원서접수 시 입력한 전화, 휴대전화 등이 변경된 경우,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입학원서 개인정보 정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수정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마) 수시모집 모든 전형의 선발과정에서 합격자 중 미등록, 등록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충원 선발합니다.
※ 지원자격 미달자 및 서류 미제출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됨
- 바) 수시모집 모든 전형의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선발합니다.
- 사) 대학 입학전형 결과, 본교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입학할 수 없습니다.
- 아) 충원 합격자 관련 세부일정은 최초 합격자 발표 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마. 기타

- 1)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2)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3) 입학전형의 지원자격을 위반한 경우, 전형자료에 대필·허위 작성이 확인된 경우,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는 아래 안내에 따라 처리합니다.
 - 합격(입학) 취소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입학)이 취소된 자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지원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4) 이의신청은 해당사유(합격, 불합격, 전형고사 등) 발생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절차는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당해 연도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합니다.
- 6)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관련 지침 및 일반 입학전형 절차와 규정 또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Ⅶ. 전형료 및 환불 안내

1 전형료

전형명	전형료
재외국민(2%), 전 교육과정 이수자	120,000원
북한이탈주민	70,000원

※ 전형료는 추후에 변경될 수 있음

2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가. 등록포기

- 본교에 등록하였으나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신청방법에 따라 등록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한: 2026. 12. 29.(화) 18:00까지
- 신청방법: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hak.mju.ac.kr>)에 접속하여 “신입학 등록금 환불” 클릭
- 유의사항
 - 수시모집 합격자가 총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총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해당 대학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등록금 환불 신청 완료 후에는 이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 등록금 환불 신청기간 경과 후 등록포기(등록금 환불 신청)를 하는 경우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환불 처리기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대학에는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고, 예비합격자에게는 총원합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지원자의 입학기회를 박탈하게 되니 반드시 지정기간 내에 환불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포함)에 등록을 한 후 등록포기(환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이중등록으로 인한 입학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불처리 기간 및 환불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등록금 환불신청 기간 중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기 개시일 이후 등록금 환불은 본교 학칙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됩니다.

나. 환불안내

1. 전형료 환불 원칙

- 원서접수 완료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전형료 환불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전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전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전형료 환불기준 및 환불액

전형료 환불기준	환불액
지원자가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 금액
대학의 귀책 사유(사전공지 없이 전형일 변경 등)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 전형료 전액
천재지변 및 지원자의 귀책이 없는 사유(질병, 사고, 사망 등)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관련 증빙서류 제출)	납부 전형료 전액

3. 전형료 비례 반환

-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될 경우, 2027. 4. 30.(금)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방법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지원자가 입력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본교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반환방법 중 반환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VIII. 기타 안내

1 학사 안내

<공통>

1.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이며, 건축대학의 수업연한은 5년입니다.
2. 본교에 등록한 모든 신입생(외국인 학생 제외)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랑·진리·봉사의 대학이념 실현과 전인교육을 위해 재학 중 **채플 과목을 4회 필수 이수(0.5학점 X 4학기 = 2학점)**하여야 합니다.

<휴학 및 전과>

1. 신입생은 학칙에 명시된 경우(질병, 의무군복무, 육아, 창업(학부생에 한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를 제외하고 입학한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2. 전과는 계열별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단, 전공자유학부 및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 입학생은 2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계열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칙 제59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칙 및 학칙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과(전공) 선택>

1.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은 해당 모집단위 내의 학과(전공이 없는 학부 포함) 또는 전공을 제한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아너칼리지(전공자유대학) 자율전공학부(인문, 자연)로 입학한 학생은 2개 학기 등록 후 2학년 진급 시에 미래융합대학 및 스포츠·예술대학을 제외한 인문/자연 캠퍼스 모든 학과(전공이 없는 학부 포함), 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을 제한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 M프레시맨 세미나, 공통교양 및 핵심교양 과목의 캠퍼스간 교차수강은 불가하며 전공 및 학생설계전공 선택은 본교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인증 및 기타 프로그램>

1. 경영대학은 한국경영교육인증원(KABEA)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교육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영교육인증프로그램에 관한 내규」로 정합니다. (경영대학 교학팀: 02) 300-0733)
2. 건축대학 건축학부는 한국건축교육인증원(KAAB)에서 시행하는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관한 내규」로 정합니다. (건축대학 교학팀: 031) 330-6765)
3. 인문대학 중어중문학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아너칼리지 자율전공학부 및 인문대학 광역 모집단위로 입학 후 중어중문학전공 선택 시 동일)은 현지학습제도(7+1 학기제)에 따라 8학기 중 1학기를 중국에서 수학합니다. (인문대학 교학팀: 02) 300-0503)
※ 2학년 2학기 중국 현지 대학(루동대학교)으로 파견하여 수업을 진행하며, 총 17학점 인정 예정

<교직과정 및 학군무관후보생(ROTC)과정>

1.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에 한하여 매년 3월 중 소정 기간 내에 교직과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2학년까지의 인성과 적성 및 성적순위를 기준으로 교직과정 승인 인원에 해당하는 이수예정자를 선발합니다. (교직팀: 02) 300-1482)
※ 단과대학별 교직과정 개설학과
① 인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 영어영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아랍지역학전공, 문헌정보학전공 /
② 사회과학대학: 행정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법학과 / ③ 미디어·휴먼라이프대학: 청소년지도학전공, 아동학전공 /
④ 화학·생명과학대학: 식품영양학전공 / ⑤ 스포츠·예술대학: 스포츠학부, 공연예술학부
2. 대학의 우수한 인재를 군의 간부로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학군무관후보생(ROTC)과정을 두고 있으며, 지원자의 한해 선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군사교육단: 031-330-6133)

학칙 및 학칙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안내된 캠퍼스별 학사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문학사지원팀: 02) 300-1471~3
자연학사지원팀: 031) 330-6023~4, 6026, 6663

2 장학금 안내

설립자장학금*, 신입생성적우수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백마장학금, 모범장학금, 자치활동장학금, 보훈장학금*, 체육특기장학금*, 외국인장학금*, 명지사랑장학금*, 세계화장학금, 학술활동장려장학금*, 연수장학금, 사회진출지원장학금, 특성화고등졸재직자전형장학금*, 창업지원장학금, 만학도전형장학금*, 취업지원장학금 외 다수의 교내외 장학금

※ *은 입학전형에 의해 수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임

※ 위 사항은 학칙 및 장학규정 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한 장학종별 및 수혜자격 기준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참조

인문학생활지원팀: 02) 300-1521
자연학생활지원팀: 031) 330-6034

3 생활관(기숙사) 안내

가. 인문캠퍼스(서울) 생활관

- 홈페이지: <https://dorm.mju.ac.kr>
- 연 락 처: 02) 300-1768
- 위 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내)
- 규 모: 연면적 11,893㎡의 부지, 9층 규모의 건물
- 부대시설: 편의점, 세탁실, 간이취사실 등
- 입사자격: 인문캠퍼스 입학생
- 선발기준: 입사신청 기간(추후 별도 공지) 내 신청한 신입생 중 선발하며, 선발 기준은 거리 점수 적용

나. 자연캠퍼스(용인) 생활관

- 홈페이지: <https://dorm.mju.ac.kr>
- 연 락 처: 031) 330-6082
- 위 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내)
- 규 모: 명현관(지하1층 ~ 지상5층) / 명덕관(지하1층 ~ 지상5층) / 기숙사 3~5동
- 부대시설: 식당, 빨래방, 열람실 등
- 입사자격: 자연캠퍼스 입학생
- 선발기준: 입사신청 기간(추후 별도 공지) 내 신청한 신입생 중 선발하며, 선발 기준은 거리 점수 적용

4 입학상담 안내

입학팀

- 전화: 02) 300-1799, 1800, 1844
- 이메일: iphak@mju.ac.kr
- 홈페이지: <https://iphak.mju.ac.kr>

5

참고자료(2026학년도 입시경쟁률)

캠퍼스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인문 캠퍼스 (서울)	인문	인문콘텐츠학부	국어국문학전공	4	20	5.00:1				
			영어영문학전공							
			미술사·역사학전공							
			문헌정보학전공							
		아시아·중동어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아랍지역학전공							
		문예창작학과								
	사회과학	공공인재학부	행정학전공	4	12	3.00:1				
			정치외교학전공							
		경상·통계학부	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응용통계학전공							
	법학과									
	경영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8	21	2.63:1				
			경영정보학과							
	미디어 · 휴먼라이프	디지털미디어학부		6	13	2.17:1				
		청소년지도·아동학부	청소년지도학전공							
			아동학전공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융합	융합소프트웨어학부	응용소프트웨어전공	8	21	2.63:1				
			데이터사이언스전공							
			인공지능전공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아너칼리지(전공자유대학)	자율전공학부(인문)		10	18	1.80:1				
소 계				40	105	2.63:1				
자연 캠퍼스 (용인)	스포츠 · 예술	디자인학부	비주얼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3	22	7.33:1				
			인더스트리얼디자인전공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스포츠학부	체육학전공,스포츠산업학전공							
			스포츠지도학전공 [야]				축구(남)			
							농구(남)			
							배구(남)			
							테니스(남/여)			
							골프			
			아트앤멀티미디어 음악학부				건반음악전공			
		보컬뮤직전공(성악, 실용보컬)								
		작곡전공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전공			
			뮤지컬공연전공							
		건축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2	6	3.00:1
							전통건축학전공			
			공간디자인학과							
		아너칼리지(전공자유대학)	자율전공학부(자연)				5	8	1.60:1	
	소 계				10	36	3.60:1			
	총 계				50	141	2.82:1			

※ 전 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전형은 제외함

IX. 별첨 각종 제출서류 양식

[별첨2] 학력조회 동의서

성명			수험번호		
모집단위	명지대학교		OO대학	OO학과(부)	
전화번호			휴대전화		
순번	학교명	학교 주소		재학기간	
		학교전화 / 팩스 / 학교 홈페이지			
1				~	
2				~	
3				~	
4		원서접수 시 자동 입력되는 내용으로, PDF 다운로드		~	
5				~	
6				~	
7				~	
8				~	

재외국민 특별전형 서류심사 서류로 제출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명지대학교 지원자 본인의 학적 및 성적을 조회함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명 지 대 학 교 입 학 처 귀 하

[별첨3] 사 유 서

성명		수험번호	
모집단위	명지대학교	OO대학	OO학과(부)
전화번호		휴대전화	
세부사항			
구분	재학기간 미충족	체류기간 미충족	재직기간 미충족
	☐ 학기결손 / 중복 ☐ 월반 ☐ 휴학 ☐ 조기졸업	☐ 지원자 ☐ 부 ☐ 모	☐ 지원자 ☐ 부 ☐ 모
	☐ 기타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필요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작성

[사유서 제출 방법]

※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소명할 사실이 있는 경우, 양식에 맞춰 해당 사항을 체크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재 사유는 틀림이 없으며, 허위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명 지 대 학 교 입 학 처 귀 하

[별첨4] 제3국 수학인정서

성명					수험번호		
모집단위	명지대학교		OO대학		OO학과(부)		
전화번호					휴대전화		
국외근무자	근무국가	근무기간	지원자	근무국가	근무기간		
제3국 수학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필요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작성

[제3국 수학인정서 제출 방법]

- ※ 지원자의 수학국가가 국외근무자의 근무국과 상이할 경우, 그 사유를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 ※ '전재 등 국가비상사태' 관련 사유는 해당 기관(학교, 직장 등)에서 발급한 서류를 추가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본인은 제3국 수학 사유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입학취소, 향후 입학지원 불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국외근무자 성명: (인)

지원자 성명: (인)

명 지 대 학 교 입 학 처 귀 하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25. 5. 30.>

(앞쪽)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약칭: 사실증명신청서, 약호:A322)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Free online application available at the government website (www.gov.kr) for the issuance of your own Certificate of Fact. Those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will be required to present only their ID cards without having to complete this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notes on the back page.)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Date of Issuanc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 copy(ies)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copy(ies) ☐ 외국인등록 열람 ()건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 신청 여부 (국민만 해당) * This field is only for Korean citizens.		☐ 포함 ☐ 미포함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 변경 이력 포함 여부, 체류지 영문표기 여부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umber), name, address or status of sojourn, address in English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성명 변경 사항 Previous Name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Previous Status of Sojourn ☐ 포함 Yes ☐ 미포함 No 체류지 영문표기 여부 Address in English ☐ 포함 Yes ☐ 미포함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Departure Record) 부터(from) 까지(to)				
용도 (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연락처 (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신청인 (Name of Applicant)

년(Year) 월(Month) 일(Day)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 /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the Head of ○○ Si-Gun-Gu or Eup-Myeon-Dong / the Head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issuance of /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년(Year) 월(Month) 일(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Consent f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본인은 사실증명 발급 또는 열람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hereby consent to the electronic verification of the applicant's required documents, in relation to the exemption of fees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through the shared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by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n case of refusal to consent to the verification by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the applicant must submit the relevant documents in person.

신청인(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complete the shaded sections, and please place a check mark for applicable brackets[].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앞쪽 신청인의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전화번호란에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각각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igible applicants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3,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가.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1)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2)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Where a principal is incapable of expressing intentions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where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benefits of the principal:
- 1)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2)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only when the spouse is deceased and the principal does not have any of those listed in the category 1)]
- 나.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a non-Korean principal has permanently left Korea:
- An employer of the principal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 다.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Where a favorable ruling is confirmed in a trial on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here the Certification is needed by financial companies that fall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the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overdue debts, or where there is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concerned (only when a debt becomes overdue or a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allows a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an original due date,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Creditor who intend to receive or access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foreigner concerned
-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fixed date stamp affixed on the agreement, etc.
- 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public interest.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s shall present his/her own ID card and the application shall be presente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 ID card (or a copy) of the authorizing person.
-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You may b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or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by submitting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another individual or falsely done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authorization.
7. 국민은 1961.1.1.부터, 외국인은 1979.1.1.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가능합니다.
Records on this certificate only cover the entry/departures from January 1, 1961, for Korean nationals and from January 1, 1979, for Foreigners.



명지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되는
뜨거운 도약의 순간을
마주해 보세요.
더 깊어진 본질과
더 새로워진 비전으로
당신의 성장을
증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명지의 다음 세대는
당신과 함께 시작됩니다.





명지대학교
MYONGJI UNIVERSITY

인문캠퍼스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자연캠퍼스 1705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입학팀 02)300-1799, 1800, 1844

본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hak.mju.ac.kr>)에 공지되는
최종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